

병마개반출통보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즉시	
신청인	병마개종류	용량(ℓ)	신청량(개)	반출량(개)	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